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261

발의연월일: 2024. 9. 25.

발 의 자 : 민홍철・임미애・윤준병

한준호 · 김준혁 · 허성무

손명수 · 김정호 · 곽상언

전재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원의 심판권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중한 사건은 부(部)에, 상대적으로 경한 사건은 단독판사 에게 각각 맡겨져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지방법원·가정법원 및 그 지원에는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으나, 시·군법원의 경우 합의부를 설치할 수 없는데, 그결과 시·군법원에서는 합의부에 속하는 사건은 심판할 수 없음.

이에 시·군법원을 통한 사법서비스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, 시·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

안」(의안번호 제426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 "(합의부지원)"을 "(지원과 시·군법원의 합의부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관할구역의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시· 군법원에 합의부를 둘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합의부지원) (생 략)	제3조(지원과 시・군법원의 합의
	<u>부)</u>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
	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관할구역의 인구 수 등을
	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
	는 시・군법원에 합의부를 둘
	<u>수 있다.</u>